

휴업 3일 이상 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!

1

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
-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)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
*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

참고

3일 이상 휴업이
필요한 산업재해
관련 사항



- ✓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,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
- ✓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, 법정공휴일, 휴무일 등은 포함
- ✓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

»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**1,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2

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.

-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*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3

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.

-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개요,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)에 전화·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
*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

**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,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산업재해조사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✓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I. 사업장 정보	①산재관리번호 (사업개시번호)		사업자등록번호		
	②사업장명		③근로자 수		
	④업종		소재지 (-)		
	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(건설업 제외)	원도급인 사업장명		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	파견사업주 사업장명
		사업장 산재관리번호 (사업개시번호)			사업장 산재관리번호 (사업개시번호)
	건설업만 작성	발주자		[]민간 []국가·지방자치단체 []공공기관	
⑦원수급 사업장명		공사현장 명			
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(사업개시번호)					
⑨공사종류				공정률 % 공사금액 백만원	

※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,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.

II. 재해 정보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성별 []남 []여	
	국적 []내국인 []외국인 [국적:]		⑩체류자격: []		⑪직업	
	입사일 년 월 일		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			
	⑬고용형태 []상용 []임시 []일용 []무급가족종사자 []자영업자 []그 밖의 사항 []					
	⑭근무형태 []정상 []2교대 []3교대 []4교대 []시간제 []그 밖의 사항 []					
	⑮상해종류 (질병명)		⑯상해부위 (질병부위)		⑰휴업예상일수 휴업 []일 사망 여부 []사망	
III.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	⑱재해 발생 개요	발생일시	년 월 일 요일 시 분			
		발생장소				
		재해관련 작업유형				
		재해발생 당시 상황				
	⑲재해발생원인					
IV. ⑳재발 방지 계획						

※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✓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[]

작성자 성명
작성자 전화번호

작성일 년 월 일

사업주 (서명 또는 인)

근로자대표(재해자) (서명 또는 인)

() 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) 귀하

재해 분류자 기입란 (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)	발생형태 □□□	기인물 □□□□□
	작업지역 · 공정 □□□	작업내용 □□□

210mmx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*산업재해조사표 작성예시(업종별, 재해종류별 등)는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(www.moel.go.kr)

정책자료

정책자료실
(산업재해조사표 검색)

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